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60
----------	-----

2020.03.24.(화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 : 2020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3월 12일

(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문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우리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○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·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(안 제7조)

○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(안 제8조)

○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○ ‘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’은 우리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, 제정 절차 등은 적절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드론”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.

가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

나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

다. 그 밖에 원격·자동·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

2. “드론시스템”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·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, 통신체계, 지상통제국(이·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),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.

3. “드론산업”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·관리·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

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드론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드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
2. 드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

는 경우

2. 위원의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)이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인인 경우

3. 그 밖에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·의결에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당)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사업시행 대상)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·공립 연구기관

2. 정부나 도가 출연·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,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

4.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

제8조(각종 지원사업)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·출연·보조·융자 등을 할 수 있다.

1. 애로기술지원, 신기반기술개발,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
 2. 드론산업 관련 유망기업·연구소 유치 및 육성
 3. 드론산업 관련 집적화단지, 연구기관,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
 4. 기술인력 양성, 창업보육, 생산지원 확충사업, 시험·인증사업
 5. 드론 관련 클러스터, 산업단지의 조성·분양 및 임대 관련사업
 6. 드론 관련 전시회,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
 7. 드론산업의 교육, 기술지도, 육성 및 보급, 인증, 시험 등 인프라 조성 및 운영
 8.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산·학·연 협력체계의 구축)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·학·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
2.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·확산을 위한 연구·개발
3.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
4.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업무의 위탁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

해 제8조의 사업을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감독) 도지사는 제6조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.

제14조(포상)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(단체, 법인,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)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■ 항공안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항공기“란 공기의 반작용(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.

가. 비행기

나. 헬리콥터

다. 비행선

라. 활공기(滑空機)

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

제5조(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) 법 제2조제3호에서 “자체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기구류, 무인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무인비행장치: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

가. 무인동력비행장치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

램 이하인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

나. 무인비행선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

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드론산업은 정부의 미래먹거리 8대 선도산업으로 제도정비, 인프라구축,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추진에 따라 지역 드론산업 생태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굴·지원하여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

3. 관련 조문

- 안 제7조(각종 지원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
- 나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다. 추 계 결 과 : 34,250백만원(국비 16,000, 도비 10,250, 시군비 8,000)
- 라. 재원조달방안 : 국·도·시군비 등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
드론산업육성 등 4개 사업	34,250	250	8,500	10,500	10,500	4,500

※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: 별첨

드론산업 육성 단위사업별 5개년(2020~2024) 투자계획

사업명	재원별	사업비(천원)					
		계	20년	21년	22년	23년	24년
4개 사업	합 계	34,250,000	250,000	8,500,000	10,500,000	10,500,000	4,500,000
	국비	16,000,000	0	4,000,000	5,000,000	5,000,000	2,000,000
	도비	10,300,000	300,000	2,500,000	3,000,000	3,000,000	1,500,000
	시군비	8,000,000	0	2,000,000	2,500,000	2,500,000	1,000,000
드론테스트 베드	소 계	20,000,000	0	8,000,000	6,000,000	6,000,000	0
	국비	10,000,000	0	4,000,000	3,000,000	3,000,000	0
	도비	5,000,000	0	2,000,000	1,500,000	1,500,000	0
	시군비	5,000,000	0	2,000,000	1,500,000	1,500,000	0
드론산업 및 전문 인력육성	소 계	1,0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
	국비	0	0	0	0	0	0
	도비	1,0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
	시군비	0	0	0	0	0	0
드론산업 고도화지원	소 계	1,250,000	5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
	국비	0	0	0	0	0	0
	도비	1,250,000	5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
	시군비	0	0	0	0	0	0
드론거점 기관구축 (신규추진)	소 계	12,000,000	0	0	4,000,000	4,000,000	4,000,000
	국비	6,000,000	0	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
	도비	3,000,000	0	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
	시군비	3,000,000	0	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